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존경하는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박상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에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제1  
조의2에서 “재해약자”의 개념을 두고, “장애인, 노인, 임  
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고려한  
대처사항을 소방업무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취지  
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도 “재  
해약자”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 대피소의 경우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피주민의 특성, 사생활보호, 안전, 모성권 보장 등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대피소의 관리에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